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55면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검토보고서·····63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0.23.(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2.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3.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수】
5.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나. 출 연 금 : 인재육성기금 1,085백만원(군비 1,000, 금고협력금 85)

다. 사업내용 :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

1) 기 간 : 2026. 1월 ~ 12월

2) 예 산 액 : 1,300백만원(**출연금 1,085,** 장학회 215)

구분	예산액(백만원)	내용	비고
계	1,300		
인건비	900	원장 및 강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400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3) 운영현황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26명
- 수 업 : 국영수사과 주요과목, 입시 및 학습법 컨설팅 등
- 인 력 : 원장 및 강사(전임 6, 시간 5), 행정보조 1
- 건 물 : 지상 2층(1,364㎡), 대강당, 강의실 10, 자율학습실 2 등

라. 기대효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및 학업성취도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지방재정법」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4)「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5)「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4조(기금보조 및 사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법인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과 기금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설치) 교육원의 설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①군수는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가 성주군별고을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과년도 교육원 운영비 집행실적 등

나. 추계기간 : 2026년 ~ 2030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총 비용(a-b)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 연도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합 계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군비(기금)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기타	0	0	0	0	0	0

5. 부대의견

성주군별고을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체기금의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교육원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인재육성기금에서 출연 받고자 함.

6. 작성자

미래전략실 교육정책팀장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 연 금 : 4,889천원(전년 대비 △14.94%, 859천원 감소)

라.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연도(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48,893,664천원

(단위 : 천원)

24년 결산 지방세	24년 결산 보통세			25년 정산액	26년 연구원 출연금
	합계	현년도	과년도		
48,893,664	48,893,664	*48,100,021*	*793,643*	-	*4,889*

마.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

바. 출연시기 및 방법 : '26. 3월 중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등

나. 최근 5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27,257*	*3,961*	*5,966*	5,612	*5,970*	*5,748*

다. 출연기관 현황 :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 · 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1만분의 1.0(연말개정예정)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 평가
3. 지방세의 연구 · 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연 기관 현황

<table>
<tr><td>설립근거</td><td colspan="3">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td><td>전화번호 : 02-2071-2748
홈페이지 : www.kilf.re.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 출연</td></tr>
<tr><td>인원현황
(2025년 8월
기준)</td><td colspan="4">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원 장</th><th>연구직</th><th>관리직</th><th>전문직</th><th>사무직 등</th></tr>
<tr><td>정 원</td><td>78명</td><td>1명</td><td>50명</td><td>2명</td><td>4명</td><td>21명</td></tr>
<tr><td>현 원</td><td>64명</td><td>1명</td><td>34명</td><td>2명</td><td>4명</td><td>23명</td></tr>
<tr><td>총인원</td><td>98명</td><td colspan="5">정원외 인원 34명 (파견공무원12, 위촉연구원13, 위촉전문원 3, 행정원4, 청사관리원2)</td></tr>
</table>
</td></tr>
<tr><td>임 원
(2025년 8월
기준)</td><td colspan="4">
<table>
<tr><th>직 책
(직책명)</th><th>성 명</th><th>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h><th>비 고</th></tr>
<tr><td>이 사 장</td><td>정 종 섭</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td><td>2024.2.2. ~ 2027.2.1.</td></tr>
<tr><td>부이사장</td><td>김 하 수</td><td>경상북도 청도군수</td><td>2025.3.13. ~ 2026.3.12.</td></tr>
<tr><td>이 사</td><td>강 성 조</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김 성 기</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오 준 혁</td><td>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td><td>2024.8.30. ~ 2025.8.29.</td></tr>
<tr><td>이 사</td><td>이 태 산</td><td>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td><td>2024.8.30. ~ 2025.8.29.</td></tr>
<tr><td>이 사</td><td>조 병 래</td><td>경기도 자치행정국장</td><td>2024.8.30. ~ 2025.8.29.</td></tr>
<tr><td>이 사</td><td>신 동 헌</td><td>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td><td>2024.8.30. ~ 2025.8.29.</td></tr>
<tr><td>이 사</td><td>김 성 수</td><td>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td><td>2025.3.13. ~ 2026.3.12.</td></tr>
<tr><td>이 사</td><td>강 범 석</td><td>인천광역시 서구청장</td><td>2025.3.13. ~ 2026.3.12.</td></tr>
<tr><td>이 사</td><td>김 성</td><td>전라남도 장흥군수</td><td>2025.3.13. ~ 2026.3.12.</td></tr>
<tr><td>이 사</td><td>박 관 규</td><td>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td><td>2023.8.30. ~ 2025.8.29.</td></tr>
<tr><td>감 사</td><td>김 정 선</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td><td>당 연 직</td></tr>
<tr><td>감 사</td><td>김 경 태</td><td>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td><td>2024.2.28. ~ 2026.2.27.</td></tr>
</table>
</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4">-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td></tr>
<tr><td>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td></tr>
<tr><td>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td><td colspan="4">
<table>
<tr><td>연도</td><td>2022</td><td>2023</td><td>2024</td></tr>
<tr><td>예산액</td><td>18,069</td><td>17,379</td><td>19,269</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13,797</td><td>12,383</td><td>13,078</td></tr>
</table>
</td></tr>
<tr><td>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td><td colspan="2">
<table>
<tr><td>자산</td><td>27,444</td></tr>
<tr><td>부채</td><td>1,875</td></tr>
<tr><td>자본</td><td>25,568</td></tr>
</table>
</td></tr>
<tr><td>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12.31기준</td><td colspan="2">
<table>
<tr><td>총수익</td><td>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18,063</td><td>16,309</td><td>1,820</td></tr>
</table>
</td></tr>
</table>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성주군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48,893,664천원)의 1만분의 1.0 출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1) 목적 및 용도

- 과거 10년전부터 월항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4. 11월 ~ 2026. 5월

3) 소요예산

- 202,800천원(매입비 등 / 군비 100% / 일반회계)
 · 부지매입비 : 186,670천원, 부대비용 : 16,130천원

※ 2025년 본예산 72,800천원 기편성 / 2026년 본예산 130,000천원(추가소요) 편성요구

4) 사업규모

- <토지매입> 1,048㎡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연번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비고
	계			1,048	186,670	
1	토지	월항면 안포리 334	묘지	466	94,132	㎡당 202천원
2	토지	월항면 안포리 산29-1	임야	582	92,538	㎡당 159천원

6)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7) 추진현황

- 2023. 2. 1. : 월항면사무소 부지매입 요청
- 2023. 2. 10. : 월항면사무소 주차장 매입계획 수립
- 2023. 11. 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필지, 1,048㎡)
- 2024. 5. 31. :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또는 사용료 지급 요청
- 2024. 8. : 전체면적 중 실제 사용면적(197㎡) 경계측량 실시
 ※ 실제 주차장 사용면적 측량
- 2024. 11. : 2025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편성(197㎡, 72,800천원)
- 2025. 3. : 매입대상토지(197㎡) 감정평가 실시
 ※ 안포리 334 ㎡당 202천원, 산29-1 ㎡당 159천원
- 2025. 4. : 감정평가액(197㎡ 34,290천원)과 토지매입 면적 불만으로 협상 결여
- 2025. 5. 2. : 토지소유자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건으로 민사소송 제기
- 2025. 7. 18. :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실제 점유면적(732㎡) 측량 실시
-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8) 추진계획

- 2025. 11. : 2026년 본예산 추가소요예산 편성요구(1,048㎡, 130,000천원)
- 2026. 1. : 미감정 사유지(주차장 외) 감정평가 시행
- 2026. 2. : 소유주와 감정평가액에 기반하여 가격협상
- 2026. 4. : 부지 매매계약체결
- 2026. 5. : 매입완료

나.「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건물 신축 취득

1) 목적 및 용도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2) 사업기간

- 2025. 3월 ~ 2027. 12월

3) 소요예산

- 2,000백만원(건축비 등 /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 지특회계)

4) 사업규모

- <건물신축> 연면적 660㎡(지상 2층), 부지면적 2,67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비고
1	건물 신축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660	2,000	반려동물 복합센터	군유지

※ 건물신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6)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3.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1.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6. 10.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및 운영

다.「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건물 신축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산불진화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불재난 대응태세 확립

2) 사업기간

- 2025. 3월 ~ 2026. 12월

3) 소요예산

- 1,000백만원(건축비 등 / 국비 16%, 도비 7.2%, 군비 16.8%, 군비추가 6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건물신축> 연면적 500㎡(지상 2층), 부지면적 75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비고
1	건물 신축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500	1,000	산불대응센터	군유지

※ 건물신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6)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3.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1. :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 2026. 7.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라.「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건물 신축 취득

1) 목적 및 용도

- 귀농·귀촌, 인근 도시 출퇴근, 외근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활기찬 농촌 분위기 형성과 정주 여건 개선 도모

2) 사업기간

- 2025. 9월 ~ 2027. 12월

3) 소요예산

- 3,000백만원(건축비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건물 신축> 연면적 660㎡(지상 2층), 부지면적 1,248.7㎡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비고
1	건물 신축	용암면 상언리 617-1 외	660	3,000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군유지

※ 건물신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6)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9.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3. :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 2026. 11.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2026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부지	2	1,048	186,670				2	1,048	186,670	
		건물				3	1,820	6,000,000	3	1,820	6,000,000	
		기타										
	1. 매입	부지	2	1,048	186,670				2	1,048	186,670	
		건물				3	1,820	6,000,000	3	1,820	6,0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분	계	부지										
		건물										
		기타										
	4. 매각	부지										
		건물										
		기타										
	5. 양여	부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부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부지										
		건물										
		기타										

2026년도 정기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2,868	6,186,670			
1	토지	월항면 안포리 334	466	94,132	2026년 5월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매입 취득	
2	토지	월항면 안포리 산29-1	582	92,538	2026년 5월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매입 취득	
3	건물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660	2,000,000	2027년 12월	반려동물 복합센터	신축
4	건물	선남면 신부리 2번지 외	500	1,000,000	2026년 12월	산불대응센터	신축
5	건물	용암면 상언리 617-1번지 일원	660	3,000,000	2027년 12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6년도 정기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해	당	없	음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6년도 정기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 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6년도 정기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양여 대상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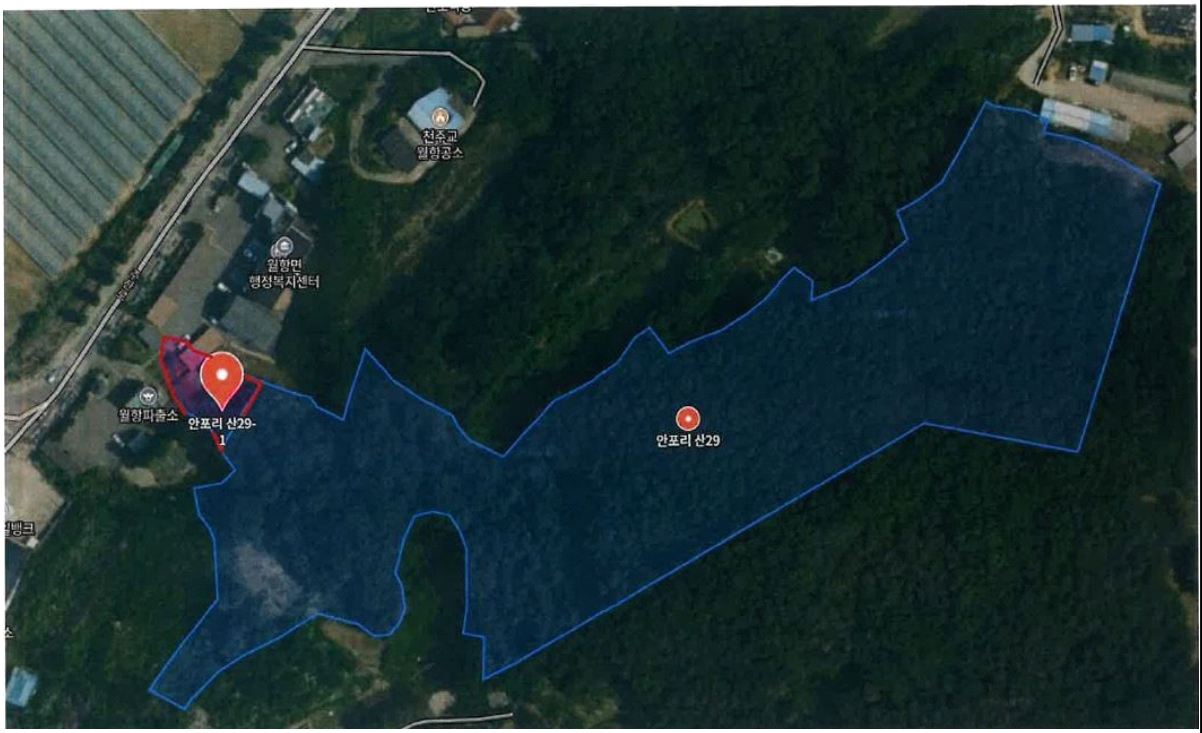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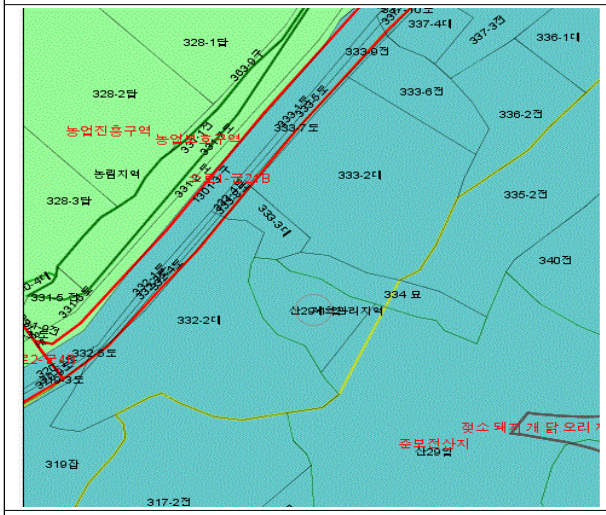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취득 참고자료

안포리 334(묘지 466㎡) / 안포리 산29-1(임야 582㎡)



안포리 산29-1(582㎡) ※ 안포리 산29에서 분할(2023.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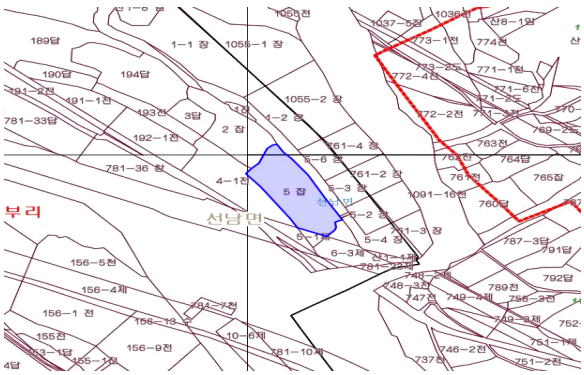


계획도(계획관리지역)	지적도
	
안포리 334(주차장 내 비가림시설)	안포리 산29-1(주차장 내 정자)
	
안포리 334(등산로)	안포리 산29-1(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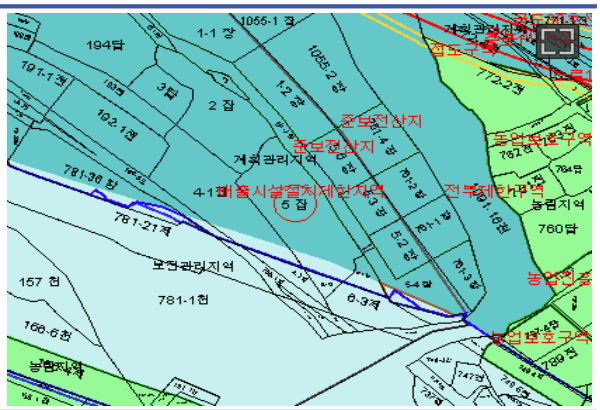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선남면 신부리 5, 2, 4-1, 6-1)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계획관리지역)



현장사진1 (신부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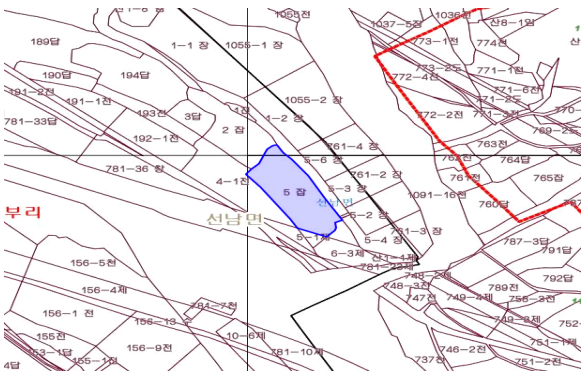


현장사진2 (신부리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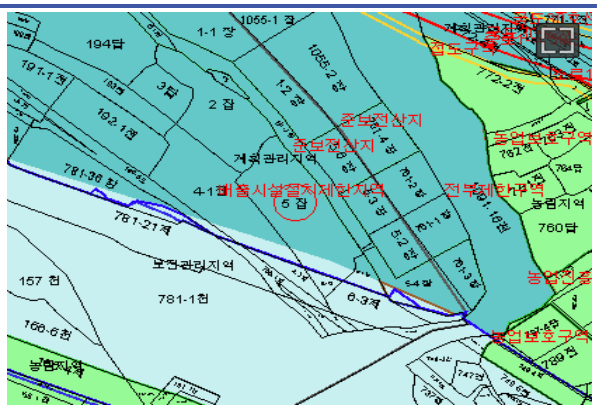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선남면 신부리 5, 2, 4-1, 6-1)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계획관리지역)



현장사진1 (신부리 5, 2)



현장사진2 (신부리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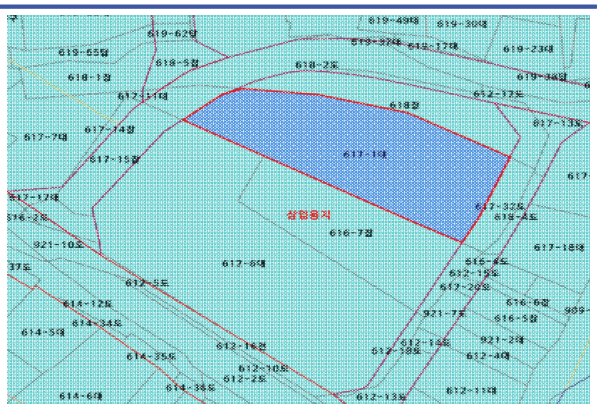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용암면 상언리 617-1 일원)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계획관리지역)



현장사진1 (상언리 617-1)



현장사진2 (상언리 616-7)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3.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 근거 마련 필요

○ 통합돌봄 제공, 서비스간 연계 등 지역사회 내 한계를 극복하여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5. 8. 25 ~ 9. 15. 까지)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기획예산실-9069(2025. 8. 4.)]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38678(2025. 8. 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성주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주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 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이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 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성주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업무, 법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소 및 읍·면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성주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구축)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 12. 2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 · 군 · 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라. 작성자

가족지원과 노인복지팀장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경상북도

나.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총액(목표액) ('93 ~ '27)	기 조성액 ('93 ~ '25)	목표액 ('23 ~ '27)	'26년 출연액
4,750	4,434	790	158

※ 산정기준 : 목표액('23~'27)에 따라 매년 158백만원 출연

3.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주요내용

구 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개인	법인	기타	시설	운영	
일 반	2억원	5억원	10억원 (기업투자유치 등)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1.0%
청년농업인 (만39세이하)	2억원	5억원	-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5억원	10억원	-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관련법령 발췌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 2019. 10. 31.>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1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육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158백만원씩 성주군 출연 배정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입	○세 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출 연 금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소계(b)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 총 비용(a-b)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정과 농정팀장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나.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다. 출 연 금 : 300,000천원(전년 동일)
라. 출연기간 : 2026. 1. ~ 2026. 12.

3. 기대효과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 가능토록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성장발판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출연계획(안) 1부. 끝.

출연계획(안)

1. 경북신용보증재단

사 업 명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대표자	김 중 권
추진기관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7층		
	설립연도	2000. 03. 22.		
	주요사업	○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주관부서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사업비(출연금)		300,000천원		
출연근거(법적근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금액	300,000	300,000	500,000	300,000	300,000

3. 2026년 출연개요

가. 내 용 : 저신용자가 대출 가능토록 보증 지원

나. 보증규모 : 60억원(재단 출연금의 12배수*)

* 관내 금융기관(농협)과 특례보증 매칭출연 협약을 통한 보증규모 증대

→ 성주군 3억원 x 12배수 = 36억원 / 농협은행 2억원 x 12배수 = 24억원

다.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라. 보 증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지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세입	세 입	-	-	-	-	-	-
	소 계(a)	-	-	-	-	-	-
세출	출 연 금	3	3	3	3	3	15
	소 계(b)	3	3	3	3	3	15
□ 총 비용(a-b)		△3	△3	△3	△3	△3	△15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		3	3	3	3	3	15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3	3	3	3	3	15

5. 작성자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상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여 조례체계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시 무료 운영 규정(안 제4조)

-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다수
- 현 조례에 무료 운영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마련

나. 지체부자유자(장애인)전용 표지 삭제(별지 제6호 서식)

- 제19조 제2항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과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8538(2025. 07. 23.)]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6727(2025. 07. 24.)]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5. 08. 21. ~ 2025. 09. 1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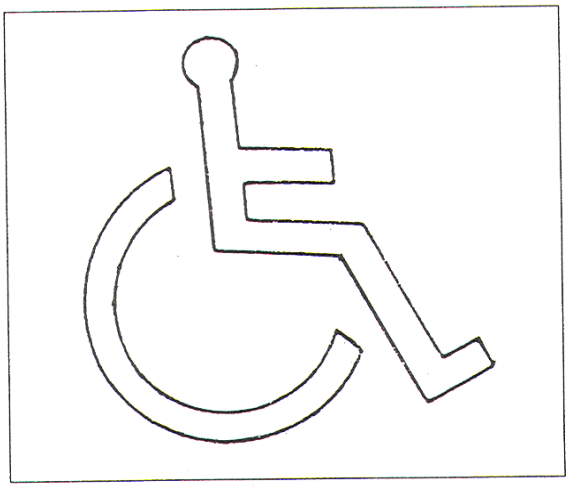
제4조제1항 본문 중 “하고·”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공영주차장은”으로, “조정”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조정”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생 략) **【별지 제6호 서식】** **지체부자유자전용표시**(제19조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40cm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하고, ---------- ---------. --- 공영주차장은 - ---------- ------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조정---. ②(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세로 32c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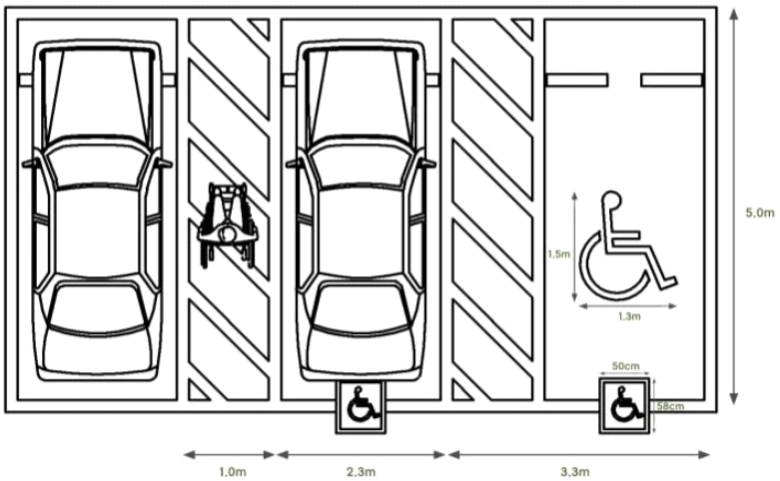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0. 23.(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 건의와 대안 제시

방문개요

○ 회 기 :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일 정 : 2025. 10. 17.(금) ~ 10. 22.(수) [기간 중 4일간]

○ 장 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외 9개소

○ 참 석 : 20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집행부 간부 등)

총 평

○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에서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이 도출되었음.

○ 이천친환경조성사업의 경우 자연재난을 대비한 보완이 요구되는 몇몇 사항이 제시되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 및 편의향상과 직결된 사업들은 사전소통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사업장별 방문결과

10. 17.(금) [1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공사 지연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중복된 사업 구간에 대하여 관계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발주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안 전 과
이천친환경 조성사업	○ 산책로 조성에 전석쌓기로 하천폭이 축소되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우려가 있으며,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전석 대신 친환경 제방(방부목 데크 등) 설치를 검토해주기 바람. ○ 이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기 바라며, 성밖숲 건너 상습 침수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함. ○ 문화재관리구역 내 공사 진행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공모신청 내용과 설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점이 많으며, 보 높이 조절(1m 낮춤)로 범람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차수벽 설치 효과성에 의문이 듦. 산단 공업용수 문제로 보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설계 상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 ○ 예산투입 대비 결과물이 빈약하며, 성밖숲 인근에 사업집중이 필요함. ○ 대흥리와 용산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잠수교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 설 과

10. 20.(월) [2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성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건의함. ○ 생태하천사업은 기본적으로 소하천, 지방하천 등 물이 많은 곳에 가능한데, 성삼천은 우수기에는 유수가 있지만 건천이라 본 사업과 적합하지 않음. **생태하천 공모 시와 변경된 내역 및 사유를 제출**바람. ○ 조류유인숲 등 조성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 기간 5년이후, 배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함	**건 설 과**
성주반다비 체육센터	○ 준공 이후에도 많은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음. 건물 하자보수(보도블럭 파손, 건물-바닥 접합부 마감 불량, 경계석 수평 등)를 철저히 시행할 것 ○ 장애인 보행 편의성을 위한 출입구 턱 높이 조절 및 출입구 비가림 시설 설치 건의함. ○ 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출입구 구배 조정 검토 등 배수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체육시설 사 업 소**

10. 21.(화) [3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도남천 정비공사	○ 하수·용수·상수 관로 이설은 소하천계획구역 외 매설이 원칙이나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설에 소요된 예산과 명확한 사유 자료 제출**바람 ○ 소하천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하천 조사 후 기본계획수립(변경) 시 공사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반영할 것**(소하천 기본계획 자료 제출)** ○ 집중호우 대비하여 인근 도로 구배조절 및 배수로 확보가 필요함.	**건 설 과**
벽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사업	○ 주민의견이 중요하므로 다수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면 청사 노후화에 따른 재건립뿐만 아니라 행정이 이끄는 방향이 아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실생활 및 편의 향상에 직결된 사업과 지역 수익 창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해볼 것을 건의함 ○ 벽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사업이 확정되면 건물 외관보다 효율성에 기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 **안전진단 평가결과 및 D등급을 받게 된 사유, 벽진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업 추진 내역 자료 제출**	**도시계획과**
초전~벽진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	○ 공사구간의 구배가 맞지않고 도로변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 시 물고임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 다수의 공사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 순서를 조정하여 기존 공사 완공 후 새로운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건 설 과**

10. 22.(수) [4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 노인, 장애인 등 취약세대를 위한 공간이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문제에 우려가 있음. 관련 입주단체,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사용공간 재배치 검토를 요구함. 또한 추후 증축을 대비한 바닥으로 보강이 필요함. ◦ 주차공간 부족 등 사업장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며, 인근에 주택가와 건물이 밀집된 만큼 주차난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 볼링 동호인 수 대비 볼링장 규모(12레일)가 과다하여 운영비,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가 우려됨. ◦ 공약사항 이행률 향상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하며,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할 것	도시계획과
도시재생2단계 (별의별 문화마당)	◦ 문화마당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많고, 지하주차장 이용객은 저조함. 주민인식 개선과 이용객이 없는 지하2층 주차장 한시적 무료이용 방안 등 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 ◦ 폭우 시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도시계획과
심산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 군 직영과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비교해보고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1차 사업의 조경, 인테리어 등 추가 공사비는 기 사업을 포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심산 김창숙 기념관 중심의 사업 컨셉을 재검토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로와 물놀이장을 조성할 것을 건의함.	관 광 과

※ 요구자료

방문일자	사업장명	요구내용	소관부서
10.20. (월)	성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①성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 시와 변경된 내역과 사유	건 설 과
10.21. (화)	도남천 정비공사	①이설에 소요된 예산과 명확한 사유 ②소하천 기본계획 제출	건 설 과
	벽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사업	①안전진단 평가결과 및 D등급을 받게 된 사유 ②벽진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업 추진 내역	도시계획과 (재무과)

조치결과 등 제출

○ 요구자료 제출 : 2025. 10. 30.(목)한

○ 조치결과(향후계획) 제출 : 2025. 11. 13.(목)한

별첨1)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처리상황부

연번기재	사업 또는 사업장명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관부서	*안전과*
방문 결과				
처리 상황 (조치, 향후 계획 등)				
진 도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완 료 (예 정)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경우 완료예정일 기재 예)2025. 12월 중*			
팀 장 (담당자)	*○○팀장 ○○○(행정전화번호)* *주 무 관 ○○○(행정전화번호)*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0. 23.(목)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성 주 군 수】
○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성 주 군 수】
○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성 주 군 수】
○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나. 출 연 금 : 인재육성기금 1,085백만원(군비 1,000, 금고협력금 85)

다. 사업내용 :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

1) 기 간 : 2026. 1월 ~ 12월

2) 예 산 액 : 1,300백만원(**출연금 1,085,** 장학회 215)

구분	예산액(백만원)	내용	비고
계	1,300		
인건비	900	원장 및 강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400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3) 운영현황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26명
- 수 업 : 국영수사과 주요과목, 입시 및 학습법 컨설팅 등
- 인 력 : 원장 및 강사(전임 6, 시간 5), 행정보조 1
- 건 물 : 지상 2층(1,364㎡), 대강당, 강의실 10, 자율학습실 2 등

라. 기대효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및 학업 성취도 향상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 1,085백만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과 지역 인재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 연 금 : 4,889천원(전년 대비 △14.94%, 859천원 감소)

라.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연도(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48,893,664천원

(단위 : 천원)

24년 결산 지방세	24년 결산 보통세			25년 정산액	26년 연구원 출연금
	합계	현년도	과년도		
48,893,664	48,893,664	48,100,021	793,643	-	4,889

마.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

바. 출연시기 및 방법 : ‘26. 3월 중 현금 출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488만 9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으로서 성주군 세정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내용

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1) 목적 및 용도

- 과거 10년전부터 월항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4. 11월 ~ 2026. 5월

3) 소요예산

- 202,800천원(매입비 등 / 군비 100% / 일반회계)

 · 부지매입비 : 186,670천원, 부대비용 : 16,130천원

※ 2025년 본예산 72,800천원 기편성 / 2026년 본예산 130,000천원(추가소요) 편성요구

4) 사업규모

- <토지매입> 1,048㎡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연번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비고
	계			1,048	186,670	
1	토지	월항면 안포리 334	묘지	466	94,132	㎡당 202천원
2	토지	월항면 안포리 산29-1	임야	582	92,538	㎡당 159천원

6)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7) 추진현황

- 2023. 2. 1. : 월항면사무소 부지매입 요청
- 2023. 2. 10. : 월항면사무소 주차장 매입계획 수립
- 2023. 11. 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필지, 1,048㎡)
- 2024. 5. 31. :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또는 사용료 지급 요청
- 2024. 8. : 전체면적 중 실제 사용면적(197㎡) 경계측량 실시

 ※ 실제 주차장 사용면적 측량
- 2024. 11. : 2025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편성(197㎡, 72,800천원)
- 2025. 3. : 매입대상토지(197㎡) 감정평가 실시

 ※ 안포리 334 ㎡당 202천원, 산29-1 ㎡당 159천원
- 2025. 4. : 감정평가액(197㎡ 34,290천원)과 토지매입 면적 불만으로 협상 결여
- 2025. 5. 2. : 토지소유자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건으로 민사소송 제기
- 2025. 7. 18. :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실제 점유면적(732㎡) 측량 실시
-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8) 추진계획

- 2025. 11. : 2026년 본예산 추가소요예산 편성요구(1,048㎡, 130,000천원)
- 2026. 1. : 미감정 사유지(주차장 외) 감정평가 시행
- 2026. 2. : 소유주와 감정평가액에 기반하여 가격협상
- 2026. 4. : 부지 매매계약체결
- 2026. 5. : 매입완료

나.「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건물 신축 취득

1) 목적 및 용도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2) 사업기간

- 2025. 3월 ~ 2027. 12월

3) 소요예산

- 2,000백만원(건축비 등 /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 지특회계)

4) 사업규모

- <건물 신축> 연면적 660㎡(지상 2층), 부지면적 2,67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비고
1	건물 신축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660	2,000	반려동물 복합센터	군유지

※ 건물신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6)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3.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1.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6. 10.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및 운영

다.「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건물 신축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산불진화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불재난 대응태세 확립

2) 사업기간

- 2025. 3월 ~ 2026. 12월

3) 소요예산

- 1,000백만원(건축비 등 / 국비 16%, 도비 7.2%, 군비 16.8%, 군비추가 6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건물 신축> 연면적 500㎡(지상 2층), 부지면적 750㎡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비고
1	건물 신축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500	1,000	산불대응센터	군유지

※ 건물신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6)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3.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1. :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 2026. 7.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라.「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건물 신축 취득

1) 목적 및 용도

- 귀농·귀촌, 인근 도시 출퇴근, 외근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활기찬 농촌 분위기 형성과 정주 여건 개선 도모

2) 사업기간

- 2025. 9월 ~ 2027. 12월

3) 소요예산

- 3,000백만원(건축비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건물 신축> 연면적 660㎡(지상 2층), 부지면적 1,248.7㎡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용도	비고
1	건물 신축	용암면 상언리 617-1 외	660	3,000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군유지

※ 건물신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6) 계약방법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9.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3. :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 2026. 11.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

○ 본 안건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10년 전부터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중인 사유지 2필지(안포리 334, 산29-1, 총 1,048㎡)를 매입하여 공용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02,800천 원이며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행정복지센터의 공용주차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 건물 신축 취득

○ 본 안건은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군유지에 연면적 660㎡(지상 2층), 부지면적 2,670㎡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센터를 신축하여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원입니다.

○ 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건물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 건물 신축 취득

○ 본 안건은 선남면 신부리 2번지 외 군유지에 연면적 500㎡(지상 2층), 부지면적 750㎡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여 산불진화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산불재난 대응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입니다.

○ 산불 대응 및 군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 건물 신축 취득

○ 용암면 상언리 617-1 외 군유지에 연면적 660㎡(지상 2층), 부지면적 1,248.7㎡ 규모의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귀농·귀촌인, 출퇴근형 농업인, 외근 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농업인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농촌 분위기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입니다.

○ 청년농업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건물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3.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 근거 마련 필요

○ 통합돌봄 제공, 서비스간 연계 등 지역사회 내 한계를 극복하여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 차원의 통합지원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주민 맞춤형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경상북도

나.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총액(목표액) ('93 ~ '27)	기 조성액 ('93 ~ '25)	목표액 ('23 ~ '27)	'26년 출연액
4,750	4,434	790	158

※ 산정기준 : 목표액('23~'27)에 따라 매년 158백만원 출연

3.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주요내용

구 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 고
	개인	법인	기타	시설	운영	
일 반	2억원	5억원	10억원 (기업투자유치 등)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1.0%
청년농업인 (만39세이하)	2억원	5억원	-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5억원	10억원	-	5년거치 15년 균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158백만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금리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업 경영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나.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다. 출 연 금 : 300,000천원(전년 동일)

라. 출연기간 : 2026. 1. ~ 2026. 12.

3. 기대효과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 가능토록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성장발판 마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금융환경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경영안정과 자립 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상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여 조례체계 정비

2. 주요 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시 무료 운영 규정(안 제4조)

-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다수
- 현 조례에 무료 운영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마련

나. 지체부자유자(장애인)전용 표지 삭제(별지 제6호 서식)

- 제19조 제2항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과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무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9조제4항 관련 별표를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법적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